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부의장 임기를 1년으로 단축〉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43호)

2024.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덕흠 · 김석기 · 한기호 · 고동진 · 김예지 · 구자근
장승규 · 장동혁 · 엄태영 · 윤한홍 · 조배숙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6.

※ 의안번호 : 94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 의원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구를 위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비슷하게 정부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4년의 국회 임기 중 4명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

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의 임기는 2년,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똑같이 2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많은 중진의원에게 국회부의장을 역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원의 역량 증진과 책임정치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국회부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고(국§12①·②)¹⁾, 국회의장의 지명으로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국§63의2③)²⁾, 국회의장의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개선 시 협의

1)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③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국§48③)³⁾에 응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함.

참고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서의 임기(2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대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임기(4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2년)으로 하고 있음. 다만,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6년이었으므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3년으로 운용했었음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부의장 역임 기회의 확대를 통한 기대효과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안정성·연속성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봄.

다만, 개정안은 안 제9조제1항 본문만을 개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취지의 구현 및 법률의 체계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는 같은 항 단서 중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 및 그 이후 선출되는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똑같이 2년으로 한 전·후반기 의장단의 선출을 전제로 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시의 직무대행, 선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5조, 제18조 등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 54 참고

[표-2] 안 제9조제1항 수정의견(예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예시)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의 임기는 2년,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 ----- ----- -----.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의 임기는 2년,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 -----2년 (부의장의 경우 1년으로 한다)----- 하고, 이후 선출되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부의장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표-3] 관련조문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18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문 의 처
02)6788-5014